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9995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17766	강득구의원 등 12인	2026.03.26.	상정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07.08.)
				소위 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7.10.)
2	19844	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7.0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7.09.)
				소위 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7.10.)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7.1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등”을 “등을 비롯한 각종”으로, “개입하였다는”
을 “개입한 것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김건희가”를
“윤석열, 김건희가”로, “하는 등으로”를 “받고,”로 하며, 같은 항 제15
호 중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을 “직무유기·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으로, “수사를”을 “수사 및 감사를”으로, “지연”을 “방
해·지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범인은닉죄”를 “범인은
닉죄, 범인도피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관계”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
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경찰청 등”을 “경찰청, 국방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3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
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중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파견검사는”을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변호사, 특별수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검사보 및”을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1회에”를 “2회에”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당시 진행 중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등의 의무, 수사기간 등,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김건희가 대통령 직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u>개입하였다</u> 는 범죄 혐의 사건	10. ----- ----- <u>등을 비롯한 각종</u> ----- ---- <u>개입한 것과 관련된</u>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u>김건희가</u> 명태균, 전성배 (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u>하는</u> <u>등으로</u> 국정 · 인사에 개입하 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u>윤석열, 김건희가</u> ----- ----- ----- ----- ----- ----- - <u>받고</u> ,----- -----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 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u>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u> <u>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u>	15. ----- ----- <u>직무유기 · 직권남용 · 공무상</u> <u>비밀누설</u> ---- <u>수사 및 감사를</u> -

지연 · 은폐 · 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 17.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 4. (생략)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 ④ (생략)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방해 · 지연-----

16.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6조
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 · ⑦ (생략)

<신설>

---경찰청, 국방부 등-----

-----.

-----150명-----.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

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

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

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

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

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생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진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수사관(공소유지번호사
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

-----.

⑤ (현행과 같음)

⑥ -----

공소유지변호사, 특별수
사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
호사 및-----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회에
각 30일

⑤ _____

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략)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제3항 및 제4항에-----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
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
야 한다.

제21조의2(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

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